

핵심상품설명서

1. 기본 정보

펀드명	DBI자산운용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위험도	2등급(높은위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고난도 펀드	미해당		
펀드 종류	개방형 / 추가형 / 개방형		
가입자격	전문투자자	최소투자금액	3억원
신탁계약기간	해지일까지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200%
판매일정	15시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5시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일정	15시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5시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5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결산 및 이익분배	- 회계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이후 매 1년 단위 결산(임의결산 가능) - 이익분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은 회계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		
투자소득의 과세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수익 중 과세대상 수익은 신탁기간 종료일, 이익분배금 지급일, 환매일에 원천징수함		
자산운용회사	- DBI자산운용(주) - 연락처 : 02-6925-5556 - www.dbiasset.com	판매회사	한양증권
수탁회사	미래에셋증권(PBS)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서비스
원금손실발생여부	이 집합투자증권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핵심설 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위험등급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 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핵심상품설명서는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해지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운용성과가 좋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시점에 성과보수가 일괄적으로 부과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해지에 따른 성과보수 부과로 인해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률 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10.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한 자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투자신탁의 상환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을 투자하나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일반 사모집합투 자기구로서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이나 전략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단일 전략을 수행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 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

용이 발생하여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분쟁발생 시 당사 준법감사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표번호 02-6925-5556). 또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내용

가.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공모주(IPO, SPAC 포함) 수요예측 참여와 국내 상장 주식, 채권, 유동성 자산, 집합 투자증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 공모주 투자

- 1) 공모기업에 대한 전문적 가치 분석
- 2) Valuation에 근거한 투자 판단
- 3) 전략 종목에 대한 선별적 의무보유 이용

ii. 단기 채권 및 유동성

- 1) 사채권 AA-이상
- 2) 전단채 및 기업어음(A1 이상)
- 3) 신용리스크 최소화
- 4) 현금성 자산 (Repo)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혼합자산투자신탁입니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투자전략 실행 이외의 여유자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국·공채와 같은 우량 채권과 예금, MMF 등 단기금융자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공모주(IPO, SPAC 포함) 수요예측 참여와 국내 상장 주식, 채권, 유동성 자산, 집합투자증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로 최대 레버리지 한도는 200%입니다.
-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I. 공모주 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후에 당해 공모주가 상장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당해 공모 주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동 기간 이 투자신탁의 해지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I. 주식가격 변동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I. 투자원본 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상환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IV. 전담중개업자 파산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전담중개업자와 자산의 중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유동성 공급, 가격 평가의 공정성 확인, 신용공여 및 레버리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담중개업자의 신용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담중개업자가 담보자산을 대여 또는 재담보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전담중개업자 파산시 대여 또는 담보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V. 성과보수 지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더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운용성과가 클수록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기대하는 성과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성과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VI.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II. 고난도 펀드 해당 여부: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난도 펀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펀드 비용(수수료·보수)

I. 펀드보수

가입자격	전문투자자	
보수 (연, %)	총 보수	1.01%
	운용	0.80%
	신탁	0.08%
	판매	0.10%
	일반사무관리	0.03%
선취수수료	없음	

I. 성과보수

- ① 이 투자신탁은 제31조의 투자신탁 보수와 별도로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 ②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판매사별로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계산되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판매회사로부터 수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성과보수는 수익자 계좌별로 각 매입건별로 그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성과보수계산기간

- 가.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첫 회계기간 말일에 도달하는 경우, 수익자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기간 말일까지
- 나. 가목에 따른 회계기간 이후 회계기간 말일에 도달하는 경우, 회계기간 초일부터 매 회계기간 말일까지
- 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회계기간 초일부터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다만,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2. 성과보수 금액 및 계산방법

- 가. 성과보수금액 : $\text{Max}[\text{초과수익금액 (1)} \times \text{성과보수율 (2)}, 0]$. 다만, 제 1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text{Max}[\sum(\text{각 매입건별 초과수익금액 (1)} \times \text{성과보수율 (2)}), 0]$.

나. 계산방법

(1) 초과수익금액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³⁾ - Hurdle금액 ⁽⁴⁾
(2) 성과보수율	10 %

(3) 성과보수 계산시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① 이익분배금 지급시(전부 해지, 상환금지급일 포함) : 성과보수 계산일 현재의 보유좌수 X 성과보수 계산일 현재의1좌당 기준가격 ② 일부 환매시: 투자신탁 환매좌수X 1좌당 환매기준가격
(4) Hurdle 금액	①High Water Mark 평가액 ⁽⁵⁾ X (1+Hurdle rate ⁽⁶⁾) ②해당 회계연도 안에 수익자 계좌별로 당해 수익증권이 여러 번 취득된 경우 각각의 매입건(결산 후 재투자금액 포함) 별로 High Water Mark 평가액과 Hurdle rate를 계산하여 각각의 Hurdle 금액을 구한다.
(5) High Water Mark 평가액	①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가액 ⁽⁷⁾ ②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Max[취득가액, 당해 및 이전 각 회계연도 초일 투자신탁 평가액 ⁽⁸⁾]. 다만, 당해 및 이전 각 회계연도 초일 이후에 수익증권의 취득이 추가로 있었던 경우에는 Max[취득가액, 당해 및 이전 각 회계연도 초일 투자신탁 평가액 ⁽⁸⁾]과 추가로 취득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환매 청구시 ① 또는 ②에 따른 매입건별로 High Water Mark 평가액 X 해당 매입건의 환매좌수/해당 매입건의 환매전 총좌수
(6) Hurdle rate	8 % X (성과보수계산기간의 일수/365)
(7) 취득가액	매입좌수 X 1좌당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8)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해당일 현재 좌수(해당일 재투자좌수 포함) X 해당일에 적용되는 1좌당 기준가격

3. 성과보수 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에서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차감한 금액이 투자원금(취득가액과 재투자금액을 포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성과보수는 환급하지 않는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수를 다음 각 호에 정한 날에 취득한다.

1. 이익분배금 지급일. 다만, 당해 이익분배금 보다 성과보수가 클 경우 이익분배금 범위 내에서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2.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일.
3. 수익증권의 전부환매일.
4. 운용사 변경에 따라 성과보수 계산시 보유중인 잔고에 대해서는 변경일의 기준가를 최초 매수기준가로 본다.

⑤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성과보수를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계산하여 인출하므로 투자자는 기준가격으로 예상한 운용성과 보다 미달하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⑥ 대표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정현종	1964.07.22	대표이사	트러스타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 대표 (사모펀드4개 설립, AUM 301.3억원 운용) 메이슨캐피탈 대표이사 (신기술금융 펀드5개 설립, AUM 1,053억원 운용) 한국증권금융 자산운용부문장 (유가증권/대체투자6조1,054억원 투자 총괄, PEF/VC 총47개 펀드5,965억원 투자)

			홍콩 삼성자산운용(Asia) CEO&CIO (ChinaFund등3천억원 펀드 운용) 삼성생명 해외투자/전략투자 수석운용역, 신탁운용부장(국내외 증권/대체투자10조6,500억원 운용, 신탁펀드2,800억원 운용)
이상모	1990.02.12.	운용역	맥스앤마블투자일임 펀드운용역 (공모주펀드 3개(일임2개, 하이일드1개)/액티브펀드 운용, 총 AUM 55억원 운용) 제피러스랩(AC) 투자심사역 (엑셀러레이터 투자심사역, 총 AUM 1,700억 펀드)

5. 환매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환매절차	수익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 환매청구 시: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 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 시: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위 사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변경에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개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익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이익분배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지급 받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성과보수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재투자) -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사유로 인해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운용사는 수익증권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를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①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②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③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과 일부환매의 규모
환매연기 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①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②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①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